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문제 해결' 위해 손 맞잡았다

- 29일(월)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서 협약... 권오을 장관, 김영진 이사장 등 참석
-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대 등 상호 협력...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증진 기대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KLAC)은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9일(월) 오전 서울지방보훈청 박정모홀(4층)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24년 5월)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전한 제대군인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제대군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무복무 16,987명, 조국수호 3,858명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대군인 등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 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책임”이라며 “공단은 제대군인의 법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고시를 제정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끝>

붙임.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황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마영렬 (044-202-5730)
		담당자	사무관	김성준 (044-202-5731)



	현행	개정('26.8.20. 시행)
대상	▶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의무복무 제대군인(전역 3년 이내) - △ 경상이제대군인 △ 취업맞춤특기병 △ 저소득·모범장병 등* ▶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한 사람 * 향후 고시 개정으로 대상 확대 가능
요건	▶ 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에서 승소가능성, 승소 후 집행가능성, 기타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결정	
내용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 지원	
사건	▶ 민사·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형사사건 * 법률구조법 등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절차	민원인 ➡ · 무료 법률구조대상 확인원 발급 신청 ↓ 지방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 · 무료 법률구조대상 확인원 발급 * 퇴역연금수급권 유무 등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 접수(확인원 등 첨부) · 법률구조 신청사건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 ·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결정(법률구조 결정) · 재판신청 등 사건 수행(화해·보전·본안 집행을 대리 등) · 소송비용교부신청 및 지급관련 정산서류 송부 등	